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 지방자치관련 법령 중심 -

최근 제·개정 법령

입법정책담당관실

【 2012. 12. 18 ~ 2013. 1. 04 】

❖ 자세한 법령정보 : http://www.law.go.kr/ ⇒ 최신법령정보 ⇒ 공포법령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제11575호, 2012.12.18)

1. 제정이유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2015세계물포럼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나. 2015세계물포럼기금의 설치(안 제5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세계물포럼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안 제8조 및 제9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사업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의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1. 제정이유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3 및 제81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안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의2)

1) 현재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을 도입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68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키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 신설).

나.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거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어 부실공사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신설).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1548호, 2012.12.18)

1. 개정이유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현행 국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재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재산이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어 행정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

나. 교환 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환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동산까지 확대함.

다. 지식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 허용(안 제65조의7 신설)

1) 일반 유형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지식재산은 주로 제3자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식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안 제65조의8 신설)

1) 중앙관서의 장등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함.

2) 비독점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다수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반하는바, 지식재산을 다수가 수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재산의 사용료 감면 사유 확대(안 제65조의10 신설)

1) 지식재산의 경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등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의 탄력적 운영(안 제65조의11 신설)

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되,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61호, 2012.12.18)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 제49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4조).

라.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11562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해 연안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합원 실익 향상 및 상호부조라는 농협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1563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와 어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564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조합원이 정책보험 가입을 통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581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1580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한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고 기준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는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고 이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에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573호, 2012.12.18)

1. 개정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 2012.12.18)

1.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557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볼 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므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1567호, 2012.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어획물 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어업 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 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551호, 2012.12.18)

1. 개정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1572호, 2012.12.18)

1. 개정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함(안 제49조).

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0호, 2012.12.18)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액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6항).

바.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안 제81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68호, 2012.12.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차량 중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형 및 소형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62호, 2012.12.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70호, 2012.12.27)

1. 개정이유

녹색성장 관련 주요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21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

녹색성장에 관한 주요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기술·녹색경영 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 건물의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 시행계획 및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안 제29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 31일인 점을 고려하여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기함.

다.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32조)

1) 검증기관의 검증 오류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검증과 관련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추가함.

2) 검증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증결과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신설)

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리업체가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66호, 2012.12.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료품 제조업자 및 음료 제조업자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그 규모를 종전에는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73호, 2012.12.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82호, 2012.12.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가구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삭제하는 등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512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때의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81호, 2012.12.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앞으로 2만원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장애인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주간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노인 등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12.12.31)

1. 개정이유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반영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는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개선(안 별표 4)
자치구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종전 15퍼센트에서 시·군과 동일하게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항목 개선(안 별표 6)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운영의 반영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경상적 수요의 산정방식 개선(별표 11)

분권교부세 지급을 위하여 경상적 수요를 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항목을 추가·개선함으로써 경상적 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도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1.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1.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

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